

화순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

심사 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4. 화순군수
나. 회부일자 : 2001. 4. 17
다. 상정일자 : 2001. 4. 17
(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병선
나. 개정사유
- 군정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이비 및 수당등의 지급규정이 없어 군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,
 - 동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고 군정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.
- 다. 주요내용
- 목적 (안 제1조)
 - 군정주요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규정
 - 적용 (안 제2조)
 -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함.
 - 대상 (안 제3조)
 -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
 - 실비보상의 내용 (안 제4조)
 - 운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 지급
 - ※ 예외 (안 제3조 제3호)
 - 실비보상 기준 (안 제5조)
 - 여비등의 보상기준 :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 준용
 - ※ 예외 (안 제3조 제5호)
 -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 적용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세정 조례안은 각종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여비 및 수당등 일정액을 보상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써,
- 군정수행 과정에 군민의 참여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규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,
- 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상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참여와 역할 수행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이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,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.의결을 거치는등 세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 : 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 : “ 수정가결 ”

* 신.구조문 대비표 참조

첨 부 : 화순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

화순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화순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2호 중 “명예간독관”을 삭제하고, 동조 제4호 중 “지원봉사자 또는 봉사 요원”을 “민간인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보상금 만을 지급하고,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단가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.

화순군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 (이하 "실비보상"이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 법령·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제3조 (대상)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·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·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
2. 평가단원·통신원·조사원·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
3. 환경보호·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
4. 군에서 주관, 주최하는 문화·체육·관광·복지·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5.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대학생

제4조 (실비보상의 내용)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하고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 단가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.

제5조 (실비보상의 기준) ①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한다.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②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3조(대상) (생략) 1. (생략) 2. 평가단원·통신원·조사원·안내원 · 명예감독관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 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. (생략) 4. 군에서 주관, 주최하는 문화·체육· 관광·복지·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 로 참여하는 자원보상자 또는 봉사 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5. (생략)	제3조(대상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 삭제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민간인 -----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실비보상의 내용)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.	제4조(실비보상의 내용) ----- ----- ----- 다만,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제3조제4호 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 침상의 매식단다 및 교통실비만을 지 급한다로 한다.